

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개정문

개정 2022. 5. 16. · 시행 2022. 6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, 「학칙」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등록금(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) 책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.
2.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체질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.
3.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,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. 단, 임기 종료 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.
4.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5.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.
6.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하며,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,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1.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.
2.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.
3.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.
4.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한다.
5.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.
6.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.

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.

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④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⑤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2 (회의 소집)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, 장소,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2. 회의 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송부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㉔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 중 "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"를 "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